

발송번호: 9-5-2023-035939033

발송일자: 2023.04.18.

제출기일: 2023.06.18.

## 특 허 청 의견제출통지서

출 원 인 성 명  
주 소  
대 리 인 성 명 조혁근  
주 소

출 원 번 호 40-2021-0207538  
상 품 류 제 43 류

1. 이 출원에 대한 심사결과 아래와 같은 거절이유가 있어 이를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 
(관계법령 : 상표법 제54조 및 제55조,  
의견서 :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,  
보정서 : 상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)
2. 위 제출기일에 대하여 매회 1월 단위로 총 4회까지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, 이 신청에 대하여 별도의 기간연장승인통지는 하지 않습니다. 기간연장은 2회 이상을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으며, 기간연장신청서는 지정(연장)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.


### 거 절 이 유

이 상표등록출원 상표는 다음 거절이유가 있어 통지합니다.

1.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2. 상표법 제38조에 해당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아래 거절이유의 상세 내용을 참고하시어 의견이 있거나 보정이 필요한 경우 상기 제출기일까지 의견(답변, 소명)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: 상표견본이미지

본 출원	인용
제4020210207538호	제401547798호
	<b>八合里</b> Baheli

(※ 본 통지서의 상표견본 이미지는 출원서에 첨부된 상표견본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)

### [ 거절이유 1 ]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

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이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·유사한 상표이므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○ 타인의 선등록상표 : 제401547798호

- 이 출원상표의 1요부인 '八슴/팔합'은 타인 선등록상표의 1요부인 '八슴'과 호칭이 동일한 표장입니다.
- 지정상품 : 전부.

### [ 거절이유 2 ] 상표법 제38조 제1항

이 출원상표는 아래와 같이 지정상품의 상품명에 부적합하거나 상품분류가 잘못 기재된 상품이므로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, 아래와 같이 상표법 시행규칙 [별표1]의 상품류 구분표에 예시된 상품명칭을 참고하여 보정(삭제 포함)하거나, 상품분류를 참고하여 정확한 상품류로 수정하면 **다른 거절이유가 없는 한**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
○ 불명확한 지정상품 : 음식조리대행업

- 보정예시 : 음식준비조달업, 식음료준비업.

※ 상기 지적된 불명확한 지정상품의 명칭을 예시된 명칭으로 보정한다 하더라도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(거절이유 1)에 의한 거절사유는 해소되지 않음을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. 끝.

